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직장인단체(2404.16)의 불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불입한도는 연간 1,800 만원이고,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 중 연 600 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주1)} 세액공제)입니다.

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적용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직장인단체(2404.16)에 가입하셨다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외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적용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 세부 사항은 동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직장인단체(2404.16)의 불입완료 후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text{연금 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text{주1)}} \text{ 현재 연금재원 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text{주2)})}} \times 1.2$
<p>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p>
<p>주 2) 연금을 최초로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p>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적용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중 선택하여 과세됩니다. 1,200 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직장인단체(2404.16)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A) 연금저축손해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요건 및 연금수령한도의 연금수령연차 등은 최초 가입자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24년 4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직장인단체(2404.16)에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연금 이외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이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연금지급시기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시기에 수령하게 되는 것은 "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입니다.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액연금	가산연금
연금지급일 전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지급일부터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